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288

발의연월일: 2022. 7. 4.

발 의 자: 강선우·김교흥·김윤덕

맹성규・설 훈・이동주

이수진 · 임종성 · 정태호

조정식 · 최기상 · 홍정민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·태도·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고,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미약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,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예방뿐 아니라 지원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「청소년 기본법」으로 이관하고,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, 가정 밖 청소년의

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 및 제16조제1항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28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의2(위기청소년 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
- 2.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이용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"를 "청소년 지원 및 발생예방을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2조의2(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 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 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· 태도·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련 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, 방법,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한다.

제2조의2(위기청소년 실태조사)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및

   실태에 관한 사항
- 2.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이용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

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

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기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·홍보·연구·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련 법인・단체에 대하여 필요
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
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
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
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
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5조의2
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
<u>할 수 있다.</u>
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
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
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
지원) ①
청소년 지원 및 발생 예방을
② ~ ④ (현행과 같음)